

부산 해양 국제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제언

2023. 10. 30.(월)

연구1실 김진건



부산국제금융진흥원
Busan Finance Center

부산 해양 국제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제언

2023. 10. 30. 연구1실 김진건

1 부산의 세계적인 위치 및 현황

□ 부산의 세계적 위치에 대한 분석

- Menon Economics(2022)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50개 주요 해양도시 중, 부산은 세계 선도 해양수도 순위 종합 11위를 기록함
 - (2015) 11위 → (2017) 13위 → (2019) 10위 → (2022) 11위

〈표 1〉 세계선도 해양수도 부산의 영역별 분석

부산	해운중심지	해양금융 및 법률	해양 기술	항만 및 물류 서비스	도시의 매력도 및 경쟁력	종합순위
2019년 영역별 지표	13위	13위	4위	7위	14위	10위
2022년 영역별 지표	24위(11▽)	16위(3▽)	3위(1△)	32위(25▽)	20위(6▽)	11위(1▽)

- 아시아/태평양 지역 해양도시 중, 종합 5위를 기록함
 - 아태지역 상위 도시: 싱가포르(1위), 상하이(4위), 도쿄(5위), 홍콩(6위)
- 부산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이며, 특히 중국으로부터 미주지역으로 출발하는 관문 항만으로서의 지정학적인 위치함
- 대체로 조선기술, 항만 처리물량 등 산업 인프라(Hardware)는 세계적인 수준이나, 해양 금융*, 해운서비스 수준 등 Software는 약점으로 평가됨
- 부산은 제조업과 항만중심으로 성장한 도시여서 해사전문법원 등 해양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약점임
 - 금융중심지나 영상중심도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의 정책적 선택의 산물이므로 특정 금융이나 문화산업에 편향된 도시목표 설정에서의 한계점이 존재함
- 부산은 2023년 9월 Z/Yen Group에서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132개 평가도시 등락 거듭함(국제금융센터지수(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34; GFCI))
 - 부산 : 51위('20상) → 40위('20하) → 36위('21상) → 33위('21하) → 30위('22상) → 29위('22하) → 37위('23상) → 33위('23하)

- 서울 : 33위('20상) → 25위('20하) → 16위('21상) → 13위('21하) → 12위('22상) → 11위('22하) → 10위('23상) → 11위('23하)
- 이에 비해 싱가포르 3위, 홍콩은 4위, 상하이 7위, 베이징 13위, 도쿄 20위로 부산은 아시아 타 도시에 비해 여전히 경쟁력 및 매력도가 낮은 도시로 평가됨
- 한국은 세제, 노동시장, 규제·감독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옴
 - 법인·소득세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고, 24시간 운영되는 국제금융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로 규제, 홍콩 등에 비해 영어가 가능한 금융인력이 적은 노동시장 특성, 증권·자산운용업 등에 대한 과도한 면허요건, 외환규제도 큰 걸림돌로 평가됨
- 부산에는 BNK를 제외한 민간 금융회사의 자생적인 집적이 어렵고, BIFC 1.2단계 완공 및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외형적 인프라는 확장되었지만 국내외 금융회사의 유입은 미흡
 - 금융회사 본점은 BNK가 유일하며, 외국계 금융기관은 지점만 2곳(일본 야마구찌은행, 중국 중국공상은행)에 불과하며, 그나마 진출했던 필리핀계 메트로은행 부산지점도 서울지점과 통합으로 2021년 3월 폐쇄함
 - 민간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, 금융공기업이 금융회사 비중 90% 이상을 차지
- 금융중심지 정책이 그간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부산은 서울과의 차별화를 이루어 내지 못함
 - 각종 전략도 거의 '선언적 구호' 수준에 그쳤으며, 현실적 방안과 방법론 제시는 부족함
 - 예산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고,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추진동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며, 국제화된 전문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

2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그간의 경과

□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경과

- 2003년 : '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' 수립
- 2007년 12월 : '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' 제정(2008.3.22.일 시행)
- 2008년 :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구성(위원장 : 금융위원장)
- 2009년 1월 :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
 - 부산을 '해양·파생금융 특화금융중심지'로 지정
- 2014년 말 :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으로 한국거래소, 기술보증기금,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한국예탁결제원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산 이전
- 2020.5월 : 정부의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발표

-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창출을 목표로 하여 3대 중점전략 제시
 - ①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
 - ②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
 - ③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
- 2020.7월 : 국민의힘 박수영의원(부산남구갑), “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” 일부 개정안 발의
 - 목적 : 2007.12월 발표된 ‘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’의 개정 보강
 - 주요내용 : 금융특구 지정,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,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금융특구청 설치 등을 규정

□ 부산의 해양금융 특화를 위한 조치

- 2014년 10월 : 한국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 개소
- 2014년 11월 : KSF 선박금융 부산국제금융센터 본부 개소
- 2014년 11월 :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
- 2015년 6월 : 한국해양보증보험 보험업 인가
- 2015년 6월 : 캠프선박운용 부산이전
- 2017년 4월 : 한국선박해양 개소
- 2018.7 :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
- 2017.9 : 부산대, 한국해양대 공동으로 해양·파생금융 특화 석사과정 개설

3 현행 제도의 문제점

□ 2007.12월 제정된 ‘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’상 문제점

- 동 법률은 제도와 지정절차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, 제도적인 지원규정 들은 조세특례법, 지방세특례법 등 다른 법에 두고 있어(구체적 지원방법 부재) 동 법률로는 아무래도 목적을 달성하기에 다소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
- 금융중심지 조성을 담당한 전담조직이 없고(실행조직 설립 등 근거 부족), 인허가 의제 등 규제 완화 사항, 제정 및 세제지원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금융특구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계

⇒ 금융중심지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추진동력 확보 필요

□ 금융중심지법상의 추진위원회 및 추진조직 문제점

- 세부 계획을 심의·결정하는 ‘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’*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이해관계가 상이한 다른 정부 부처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, 금융기관 설립·경영관련 인허가는 금융위에서, 금융기관의 심사·지도감독은 금감원에서 담당하는 등 권한이 각각 분산되어 있음

* 현 조직체계 : (위원장)금융위원장, 관계부처 차관, 관계 지자체장, 금융협회장, 민간 등 21명

〈표 2〉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원(2020년 기준)

구분	구성원
위원장	금융위원회 위원장
위촉위원(10명)	교수, 은행장 등 10명
당연직 위원 (4명 : 행정기관)	1. 기획재정부 차관 2.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. 서울시장 4. 부산시장
당연직 위원 (6명 : 금융 유관기관)	1. 한국투자공사 사장 2. 한국거래소 이사장 3.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4.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장 5. 생명보험협회 회장 6. 손해보험협회 회장

⇒ 위원장의 지위 격상, 위원은 각부 장관/지자체장/민간단체장 등으로 개편

⇒ 위원회 하부에 “금융중심지 실무추진단” 구성

□ 현행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는 적용여건 및 대상이 매우 제한적

- 현 조세감면 혜택 :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%(3년), 50%(2년) 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말 까지, 금융중심지에서 ‘창업’하거나 ‘사업장을 신설’하는 금융·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음
- 특히 기존사업장을 ‘이전’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상이 매우 제한적임

□ ‘금융특구’ 지정이 필수

- 부산소재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대폭 감면, 근로시간 유연화 등 ‘파격적인’ 조치 필요함
-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이 독자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하도록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
 - 관련 조직으로 ‘금융위원회 내의 하나의 국을 신설하여 금융위 외청으로 부산에 특구청’을 신설하여 세부전략 마련, 집중지원 등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 필요
 - 서울과 부산의 강점을 살려 개별적인 특성의 중심지 정책을 추진하되, 블루오션이 되는 디지털금융 육성 및 인력양성 등 서울과의 연계된 정책 강구 필요
- 한편으로 부산의 지역개발, 혁신적인 금융산업 제고 등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으로 ‘부산형 역외금융센터’*(off-shore financing center) 발전방안도 강구할 필요
 - * 비거주자간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세 및 외환·자본상거래의 계약을 예외적으로 면제 또는 축소해줌으로써 그들의 금융거래를 중개해주는 금융센터임. 이를 통한 금융거래는 국내 금융시장과는 거의 절연되어 있으며 단순히 비거주자간의 금융거래에 대한 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여러 가지 소득을 얻는 데 관심을 두고 있음. 어떤 한 지역이 역외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들의 금융거래에 대해 그들이 본국이나 타지역에서 적용받는 규제들을 면제해 주어야 하고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제통신망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이 발달되어 있어야 함
 - 다만, 역외금융은 자금이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유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유동성 통제장치 마련 및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, 자칫 국가간 지나친 조세감면경쟁으로 한국이 ‘조세피난처’로 간주되지 않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 등 강구 필요
 - 특구는 BIFC를 중심으로 한 문현금융단지 지역 또는 이와 연계한 현대화된 일부 제한적인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(ex. 아일랜드의 역외금융특구인 IFSC 센터, 중국의 천진지역 물류특구 등)
- 결국, 제도 마련의 핵심은 수많은 ‘일자리의 확보’, ‘돈 벌 수 있는 정보의 집중’ 및 이에 따라 ‘글로벌 인재’들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의 금융도시 부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

□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 혜택 필요

- 부산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해외 투자자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있음
- 아일랜드, 홍콩, 싱가포르, 벨기에 등도 유치하려는 타겟기업에 따라 과감한 세제 인센

티브를 부여

- 단순하고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조세체계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어야 함
 - 아일랜드는 전 세계 역외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대폭 감면, 전 세계 대부분 국가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, 국가 간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영세율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, 과학·기술 첨단산업유치를 위해 R&D 투자에 대한 일정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
 - 싱가포르도 17%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, 감면 기간이나 감면개시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 등은 정부와 외국인투자자 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맞춤형 조세제도를 운영
 - 홍콩도 법인세에 해당하는 이윤세는 15~16.5%로 현저히 낮으며, 근로소득세는 5.3%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
- 법인세·소득세 감면기간 철폐 : 현재 외국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5년간의 법인세·소득세 감면기간(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참조)을 철폐하고 세율을 완화할 필요
- 자본이동(이자, 배당, 사업소득)에 대한 원천징수세(Withholding Tax) 면제 등 인센티브 강구

〈표 3〉 현행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관련 인센티브 내용 정리

⇒ (이전 인센티브)

- ① 해외 금융기관(상근 3인 이상, 투자금 30억 이상) BIFC 63층 이전 시 전용면적 522.89㎡ (약158평) D-space 조성, 25년간 무상임대
- ② 법인세 · 소득세 감면(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%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% 감면)
※ 상세내용 첨부 참조

⇒ (거주 관련)

부동산투자 이민제(해운대 관광리조트 7억원 이상, 동부산 관광단지 5억원 이상) F2(경제활동 가능), 5년후 F5(영주권)비자 부여

⇒ (기타 인프라) 5개 국제학교(영2 · 중1 · 일1 · 러1) 및 177개 외국인 진료가능 의료시설 등

〈표 4〉 국가별 법인세·소득세 비교

	법인세	소득세	부가가치세
한국	25%	42%	10%
싱가포르	17%	22%	0%
홍콩	16.5%	15%	0%

〈표 5〉 국가별 노동시간 규제 비교

	주당 노동시간(법정)	주당 노동시간(최대)
한국	40시간	52시간
싱가포르	44시간	72시간
홍콩	무제한	무제한

※ 출처: 국제신문

□ 금융중심지 추진체계의 개선

- 대통령 직속기구로 ‘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’를 설치하고 각 부 장관을 위원으로 참여하여 강력한 추진동력 확보 필요
- ‘부산국제금융진흥원’의 위상 및 역량 강화
 - 각각 분산된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 및 금융중심지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역할 확대 필요

□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 및 규제완화

- 사전 리스크 중심의 감독시스템으로 변경 필요
 - 최소 한도의 규제만 설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유로운 사업을 보장하고, 사후감독이 아닌 사전적 리스크 중심의 감독시스템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
 - 영국, 아일랜드, 홍콩 등 구 영국령 국가들은 금융 감독을 직접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기업의 세부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회계 감사법인에 1차 감독기능을 위임하거나 업계 자율규제, 사전적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, 만약 법규 위반이 발견될 시에는 상당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함
 - 미국,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감독기관 들은 컨설팅 성격의 상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,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항시 파악하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, 컴플라이언스, 리스크 관리시스템 등 사전적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.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내규의 마련과 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에 중점을 둬

□ 매력적인 도시, 높은 수준의 생활편의시설로 체질 탈바꿈 필요

- (자유로운 영어사용 환경 구축) 영어의 공용화는 현행 부산의 큰 약점요인임
 - 아일랜드, 싱가포르, 홍콩, 벨기에 등 대부분의 금융중심지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

를 자유롭게 구사하여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는 환경임

- BIFC 내외에 한글만 명기된 안내표지판을 영문 표기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
- **(가용노동인력)** 가령 아일랜드는 전체인구중 25세 이하 가용 노동인구의 비율이 33.3%로 유럽지역 중 젊은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, 교육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음
 - 아일랜드의 교육정책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요구하는 각 분야별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
- **(교통인프라 구축)** 세계 주요국 국제노선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필요하며, 부산은 가덕도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할 필요가 있음
 - 현재 부산은 해외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국제 노선망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원격지 인천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크며, 이외에 정체없고 소통이 빠른 도로망, 어디로든 철도, 지하철 연결이 가능한 육상교통체계를 구축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음
- **(국제학교 설립 및 외국학교 유치)** 외국인 자녀들이 영어 등 국제 언어로 수학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중고등 국제학교 및 국내 대학의 설립 또는 유수의 외국 대학교 분교를 유치할 필요
- **(의료시스템의 선진화)** 병원, 약국 등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구축
- **(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주택 단지)** 부산의 현대화된 고층의 해운대 오피스빌딩 등은 훌륭한 거주 매력 요인임
 - 주거요건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소임

□ 금융의 배후 또는 Target 단지 육성 필요

- **(배후산업 필요)** 서비스 또는 중개숙성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의 타겟이 되는 배후기반이 필요함
 - 홍콩은 거대 중국의 수요를 배후로 하여 중국과 육로로 접근이 가능한 지정학적 이점이 있고, 영어 및 광둥어의 통용, 수출입 관세가 없고, 중국 정부의 각종 지원 등 대중국사업의 중계창구로서 유리한 입지를 갖추
 - 싱가포르의 서양의 중간경유지로 글로벌 물류의 중개지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갖추었으며, 영국식 제도, 영어의 공용화, 국제 공항 네트워크가 완비된 편리한 교통시스템 등 국제 금융 중심지 요건을 갖추
 - 아일랜드는 전 세계 물류 최대시장인 미국-유럽의 대서양 양안을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이자 교통의 중개지이고, EU가입 멤버로서 전 세계 기업의 거대 배후 EU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지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
- 아일랜드는 자국 젊은 인력의 고용창출을 정책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러한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첨단 서비스업 유치 및 발전을 위해 국가 및 산하기관이 오랜 기간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여 왔으며, 현재는 항공기정비·수리, 역외금융센터, (재)보험, 역외펀드 및 항공기 리스, 제약, 영화, IT 연구산업 등이 가장 발달된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발돋움함
- **(부산형 Target 단지 조성)** 부산으로 전세계 금융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을 배후 또는 타겟으로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
 - ‘국제금융중심지’라고 하면 모든 여건이 일단 부산보다는 서울을 떠올릴 정도로 부산의 경쟁력이 약함에 따라 어떤 부분을, 어떻게 설정하여 육성시킬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함
 - **(데이터센터 유치)** 부산은 아태지역 지진 발생의 안전지대로 일본, 대만의 글로벌네트워크의 우회경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,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 해저케이블의 90% 이상이 부산으로 들어오며, 일본과는 최단거리의 전용 해저케이블이 위치
 - 따라서 기존의 데이터센터 강자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관련 산업을 유치할 경우 다양한 산업영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수 있으며,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함
 -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‘부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’이 시행됨에 따라 기장에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부산은 특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화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예정
 - **(복합 첨단물류 육성)**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홍콩, 싱가포르, 상하이 등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고, 이를 몇 단계 뛰어 넘기 위해서는 비대면금융, 핀테크산업, 블록체인, 빅데이터, 복합물류, 녹색금융,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차세대 미래형 시스템으로 바로 전환할 필요
 - 블록체인을 이용한 창업 활동 및 새로운 핀테크 산업 장려 등 IT 기반 금융혁신을 반영한 지속 경제활동이 가능한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
 - 핀테크 성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엑셀러레이터 육성방안을 제시할 필요

별첨 BIFC 인센티브 제도

□ 외국 금융기관

구분	지원대상	본사/지역본부신설	지점 신설	한국 내 본사/지역본부 이전	한국 내 지점 이전
		(국외▷부산)		(지역외▷부산)	
법인세 ¹⁾ 소득세 ¹⁾	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	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%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% 감면		해당없음	
재산세 ^{1) 2)}		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 년간 100% 면제		해당없음	
취득세 ³⁾		창업(또는 신설)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		해당없음	
입지보조금 ⁴⁾	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	용지·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% 감면 (기관당 50억원 이내)	해당없음	용지·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% 감면 (기관당 50억원 이내)	해당없음
고용보조금 ⁴⁾	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 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	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(최대 6개월, 기관당 2억원 이내)			
교육훈련 보조금 ⁴⁾	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	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(최대 6개월, 기관당 2억원 이내)			
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⁴⁾	내국인 10명 이상을 상 시 고용하는 금융기관	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%이내(기관당 10억원 이내)			

□ 국내 금융기관

구분	지원대상	본사창업	지역본부/ 지점 신설	본사이전	지역본부/ 지점 이전
				(지역외▷부산)	
법인세 ¹⁾	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	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% 면제하고 다음 2년간 50% 감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 년간 100% 면제		해당없음	
소득세 ¹⁾					
재산세 ^{1) 2)}					
취득세 ³⁾		창업(또는 신설)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		해당없음	
입지보조금 ⁴⁾	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	용지·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% 감면 (기관당 50억원 이내)	해당없음	용지·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% 감면 (기관당 50억원 이내)	해당없음
고용보조금 ⁴⁾	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 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	이전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(최대 6개월, 기관당 2억원 이내)			
교육훈련 보조금 ⁴⁾	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	이전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(최대 6개월, 기관당 2억원 이내)			
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⁴⁾	내국인 10명 이상을 상 시 고용하는 금융기관	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%이내(기관당 10억원 이내)			

※ 근거법

- 1)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1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6
- 2)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제9조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 의거)
- 3)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4조 제1항
- 4)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2조)